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나. 보험의 종류 및 연금지급형태

보험의 종류		연금지급형태		
1형	적립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10~40년, 100세 보증)
				체증형 (10~20년 보증)
	소득보장형 (10~20년 보증)			
	거치형		보증금액부	
2형		적립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체증형 (10~20년 보증)			
	소득보장형 (10~20년 보증)			
	거치형	보증금액부		

※ 이 상품의 1형의 판매채널은 범용(온라인채널 제외)으로 하며, 2형의 판매채널은 범용(온라인채널 포함)으로 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까지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Y)	보험료 납입주기
적립형	3년	0 세 ~ (Y-10)세	45세 ~ 85세	월납
	5년	0 세 ~ (Y-10)세		
	7년	0 세 ~ (Y-10)세		
	10년	0 세 ~ (Y-10)세		
	15년	0 세 ~ (Y-15)세		
	20년	0 세 ~ (Y-20)세		
거치형	일시납	0 세 ~ (Y-10)세		일시납

※ 다만,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보증지급기간+1” 세 임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보험료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3년납	50만원 이상
5년납 이상	20만원 이상

(2) 거치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일시납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기본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①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된다.
- ②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한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로 한 날로 한다.
- ③ ‘(다)’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한도의 초과가 발생하는 해당 월부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 ④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1회에 5만원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⑤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나)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1회에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라) ‘(다)’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의 한도를 적용한다.

(2) 거치형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

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다)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 의 한도를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11. 적립이율 등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한 적립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

중 평균한 비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의 총 인출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초년도 연금연액 및 연금개시시점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된다.

바.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11. 적립이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연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이하 ‘적립이율’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확정이율

(2)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공시이율

나. ‘가’의 확정이율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율을 말한다. 확정이율 수준은 경과기간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 된다.

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라.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 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라)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4)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투자리스크 전체를 부담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

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마.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한다.

아.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적립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4.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종신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다.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라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공제액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5.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 일시중지’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 나. ‘가’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 다.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 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된다. 다만,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한 특약보험료는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주계약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투입되어 적립된다. 또한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금개시나이가 최대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 라.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주계약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함. 이하 동일]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 마.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신청 1회당 12개월 (신청시점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 횟수는 3회를 한도로 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신청으로 월대체보험료를 해약환급금에서 더는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아.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다만,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월정기추가납입 보험료의 납입을 재신청할 수 있다.

16.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에 ‘나’ 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는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의 ‘나.’ 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으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장기유지보너스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text{장기유지보너스} = \text{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times \text{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

(1) 적립형

(가)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전일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및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3년납	5년납 이상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2.0%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3.0%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4.0%

(나) ‘(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는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의미한다. 다만,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에는 특약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납입보험료 및 중도인출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거치형

(가)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은 기본보험료로 하며,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및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5.0%

다.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산한다.

17. 기타

가.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적립형 :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MIN [납입기간, 10]
- (2) 거치형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나.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 (1) 계약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적립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후에

연금지급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1)’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의 일정비율(10% 단위)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연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라.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의 퇴직시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다른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1)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해당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이며, 법인이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하는 계약
- (2) ‘(1)’의 계약이 다음 각 목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보험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30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 (나) 피보험자 변경신청시 변경할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다) 변경할 피보험자의 변경 전 계약체결시점 나이가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변경 후 납입하려는 보험료가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3) 계약자가 피보험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다만,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일(다만,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 (4) ‘(3)’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한 경우 승낙일부터 변경 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한다.
- (5) ‘(3)’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고, 변경 전·후의 정산 차액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추가 공제하거나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한다.
- (6) 피보험자 변경 신청 시 계약자가 연금개시나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할 피보험자에 대하여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금개시나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있다.
- (7) 회사는 변경할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 (8) ‘(4)’에 따른 승낙일 전일까지 계약자는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낙일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9) ‘(7)’에 따라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1형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온라인채널 제외)으로 한다.
- (2) 이 상품의 2형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온라인채널 포함)으로 한다.
- (3) ‘(1)’ 및 ‘(2)’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9%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

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제외한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자.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예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